

인도네시아

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
(2014년 2월 04일)
(자카르타 aT)

구분	핵심 내용
유통	☐ 수까부미 주류생산판매 금지

항목	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	☐ 주요 내용 ○ 수까부미(Sukabumi : 서부자바에 위치해 있으며 자카르타 남쪽으로 3시간 거리)지역 주류생산판매에 대한 ‘수까부미 지방령 2014년 1호’가 지난 1월 17일부터 발효. ○ 주류 금지란 병원에서 의학적 처방과 종교행사 목적을 제외한 주류의 생산, 조제, 유통, 판매 무상배포 및 음주와 주류 소비의 금지를 의미. ○ 해당 령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수까부미에서 주류를 생산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. ○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하는 자는 2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5백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함. 또한 수까부미 지역 내에서 음주를 하는 자은 1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함. *10,000 루피아 = 890 원 (2014-02-04 기준) ○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단체는 사업허가 취소의 규제가 가해질 수 있음. ☐ 시사점 / 대처 방향 ○ 수까부미 주류 생산판매 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유통업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파 ☐ 발표 일자/ 출처 ○ 수까부미 지방령 2014년 1호(2014-01-17), Jakarta Biz Daily, Daily Indonesia(2014-02-03)